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설교육연수원규정

제정 1997. 12. 16. 개정 2001. 12. 31.

개정 2008. 8. 21. 개정 2017.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제2조(연수목표) 연수원은 교원으로서 기본 자질과 직책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교육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8. 8. 21)

제3조(연수대상)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교원 등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제4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연수원에는 교육의 이론·방법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과정과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1 및 별표2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자격연수과정을 두며, 교육연수원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8. 21)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5조(조직) ① 연수원에는 교육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 8. 21)

② 연수원장은 사범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사범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연수원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원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부장을 둘 수 있으며, 연수부장은 연수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기능)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 8. 21)

1. 교원의 재교육
2. 교원의 직무 연수 및 자격 연수
3. 위탁 연수에 관한 사항

제3장 연수 기간 및 시간

제7조(과정별 연수인원) 연수원의 각 과정별 학급당 연수 인원은 40명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1)

제8조(연수시기) ① 연수원의 연수 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② 자격연수과정은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에, 그 밖의 과정은 적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1)

③ 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연수 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수 기간 및 시간) ① 직무연수의 연수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② 교사1급, 교감, 원감 자격 연수의 연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8. 21)

③ 교장, 원장 자격 연수의 연수 기간은 5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 시간은 3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8. 8. 21)

제10조(휴업일) 연수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5월 15일)

제4장 입원·연수 과정 및 수료 기준

제11조(입원시기) 연수원의 각 과정별 입원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서류제출) 연수원에 입원이 허가된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연수원의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1일 연수시간) ① 연수원의 1일 연수 시간은 6시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야간에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연수과정) 연수원의 자격연수과정의 내용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며, 직무연수과정의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일반교양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연수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1)

제16조(이수증서) 연수원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8. 8. 21)

제17조(성적평가) ① 연수원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 점수로 표시한다.

② 성적 평가의 방법은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료기준) ①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 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21)

1.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며,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
2. 학업성적이 수료 사정 기준에 도달한 연수자라도 총 이수 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낙제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로 연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1)

제5장 연수원운영위원회

제19조(설치) 이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8. 21)

1. 수업 및 연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 과정에 관한 사항
3.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연수원장과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사범대학장이 임명·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수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 8. 21)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 8.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신설 2008. 8. 21)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상 벌

제23조(표창) 연수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1)

제24조(징계)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1)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대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7. 질병, 그 밖의 연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 제25조 (재교육금지) 제24조의 각 호 1에 해당되어 퇴원 처분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21)

제7장 보 칙

- 제26조(재원 등) ①연수원의 재원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전입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7. 2. 23.)
 ②회계는 기성회계에 준하여 관리하며,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이 한다. (신설 2008. 8. 21)
- 제27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21)

부 칙(1997. 1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생의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연수중인자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학칙 제13조제3항제3호의 내용 중 “부설중등교육연수원”은 “부설 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부 칙(2017. 2. 23.)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⑧까지 생략

⑨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설교육연수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원 등) 본문 중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한다.

⑩부터⑭까지 생략

[별표] (신설 2008. 8. 21)

교육연수원 교육과정

1. 유치원·초등교원

2 급 정 교 사 과 정		1 급 정 교 사 과 정	
교 과	이수시간 배당비율 (%)	교 과	이수시간 배당비율 (%)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10 ~ 20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10 ~ 20
2. 대학졸업정도의 교직교과 및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교직일반)	10 ~ 20	2. 2급정교사과정 이수후 계속 이수하여야 할 교직교과 및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 (교직일반)	10 ~ 20
3. 유치원·초등학교의 전 과목에 관한 교과(전문영역)	60 ~ 80	3. 유치원·초등학교의 전과목에 관한 교과(전문영역)	60~80
합 계	100	합 계	100

2. 중등교원

2 급 정 교 사 과 정		1 급 정 교 사 과 정	
교 과	이수시간 배당비율 (%)	교 과	이수시간 배당비율 (%)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10 ~ 20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10 ~ 20
2. 대학졸업정도의 교직교과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 (교직일반)	10 ~ 20	2. 2급정교사과정 이수후 계속 이수하여야 할 교직교과 및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 (교직일반)	10 ~ 20
3. 중등학교의 각 교과 또는 과 목에 관한 교과(전문영역)	60 ~ 80	3. 중등학교의 각 교과 또는 과목에 관한 교과(전문영역)	60~80
합 계	100	합 계	100

3. 유치원·초등·중등교원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원감과정		교장·원장과정	
교과	이수시간 배당 비율 (%)	교과	이수시간 배당 비율 (%)	교과	이수시간 배당 비율 (%)
1. 일반교양교과 (기본소양)	10 ~ 20	1. 일반교양교과 (기본소양)	20 ~ 30	1. 일반교양교과 (기본소양)	10 ~ 20
2. 2급교사 자격취득 후 계속 이수하여야 할 교직교과 및 특 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 (교직일반)	10 ~ 20	2. 교육대학원 졸업 후 계속 이수하여 야 할 교직교과 및 특기·적성활동 에 관한 교과 (교직일반)	10 ~ 20	2. 교감과정 이수 후 계속 이수 하여야 할 교 직 교과 및 특 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 (교직일반)	10 ~ 20
3.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의 해당 전공에 관한 교과 (전문영역)	60 ~ 80	3. 교육행정·교육재 정등 교무관리에 관한 교과 (전문영역)	50 ~ 70	3. 교육행정·교육 재정 및 조직 경영 등 학교 운영관리에 필 요한 전문분야 에 관한 교과 (전문영역)	60 ~ 80
합 계	100	합 계	100	합 계	100

교 육 연 수 이 수 증

증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수종별

이 수 시 간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효 력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천 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 육 연 수 원 장